

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

- 지난해 국회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

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.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('26.1.19~2.5),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·시행 될 예정입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【첨부】 1.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
2.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
- 소득세(4211~3, 4215~4217), 법인세·과세자료법(4221~4, 4226), 상속증여세·종합부동산세(4311~2, 4314, 4316, 4308), 금융세제·교육세(4231~4, 4236), 부가가치세·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(4321~3, 4326), 개별소비세·주세·조세범 처벌절차법(4331, 4333, 4337), 국제조세(4651~3, 4656~7, 4661, 4663, 4666), 조세특례(4131~3, 4136, 4191~3), 관세법·관세환급특례법·관세사법(4411~3, 4416, 4418, 4461~3),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·세무사법(4151, 4154)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4121, 4126)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진규 (044-215-4110)
		담당자	서기관	권순배 (ooh471@korea.kr)